국민헌법자문특위, 문재인 대통령에 개헌자문안 보고…'분권'이 핵심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 축소…견제와 균형 '작동'
–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등 5대 원칙…직접민주주의 도입
– 헌법표기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기 어법도 변경

법무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주권 실질화·기본권 확대·자치분권 강화·견제와 균형 내실화·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마련된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권력구조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도 축소·조정했다.

특위는 집권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는 '자치분권 강화' 원칙에 따라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게 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했다.

특위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권 강화 방안을 담았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권 등을 신설하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

고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자문안에 담겼다.

특위는 또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에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국민주권 개헌'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해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게 했다.

'민생 개헌'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특위는 "자문안은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하게 했다"며 "일본식으로 표기된 어법 등은 우리 문법에 맞게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 언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2월 13일에 공식 출범한 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활동했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벌여 개헌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는 한편, 헌법기관과 정당 대표,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특위는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각 분과위가 2박 3일 합숙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열었고 4차례 특위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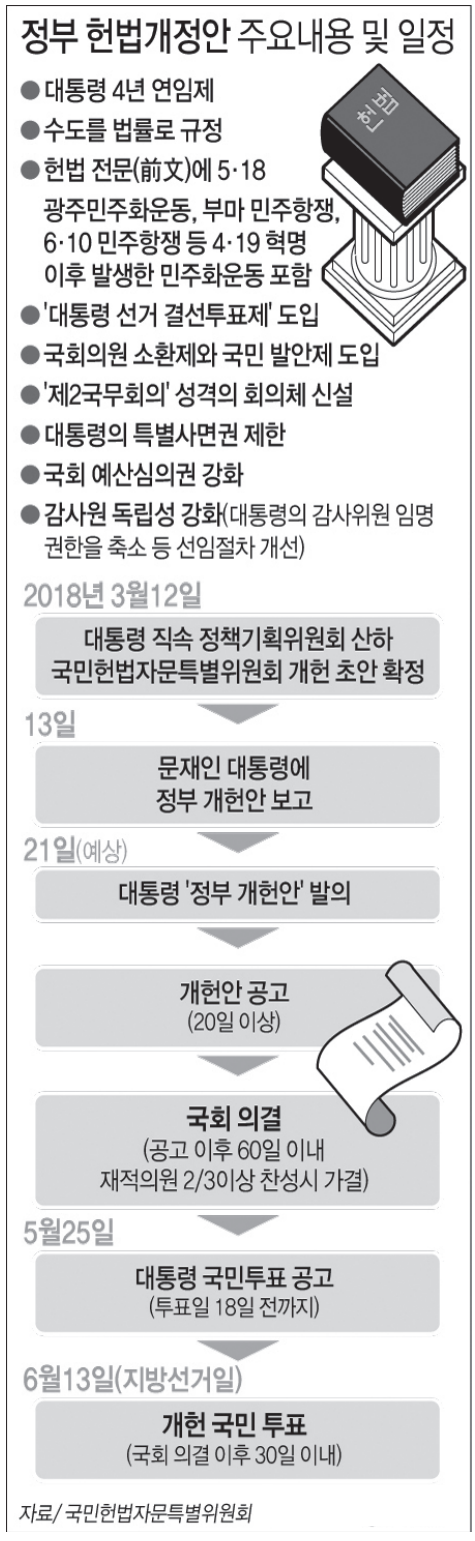

법무매거진

서울중앙지법, '구속적부심' 담당부서 '형사수석부→형사항소부'

–형사합의부에 경제전담부 증설… 영장전담판사 3명 모두 부장판사급 기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이 구속적부심 담당 부서를 형사수석부에서 형사항소부로 변경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형사항소부에서 구속적부심을 담당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형사항소부는 중앙지법 내에서 2심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낸 구속적부심에서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굵직굵직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도 경제전담 형사부가 증설되는 등 전면 개편됐다.

신설된 경제전담 형사부는 형사34부로,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온 이순형(4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부패전담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심 등을 맡았던 형사27부 재판장에는 여성인 정계선(49·27기) 부장판사가 기용됐다. 공직비리·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계선(충주여고, 서울대 법대)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통한다.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새로 바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에는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은 통상 부장판사 2명, 고법 배석급 판사 1명 정도로 구성됐으나 이번 사무분담에서는 3명 모두 부장판사로 채워져 무게감이 더해졌다.

기존 영장전담인 권순호(48·26기)·오민석(49·26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재판부로 옮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

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던 '막내' 강부영(44·32기) 판사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이동했다.

민사사건 재판부에도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재판장으로 보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핵심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동연(54·26기)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자리를 옮겨와 민사22부 재판장에 배치됐다. 이 재판부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김동진(49·25기) 부장판사는 기업 담당 재판부인 민사16부를 이끌게 됐다. 민사 16부는 지난해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을 심리했던 재판부다.

(법률신문 인용)

법무매거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뉴스

Ⅰ. 개정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총칙편

민법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추인(追認)(안 제15조), 유증(遺贈)(안 제47조), 비치(備置)(안 제55조 제1항), 소급(遡及)(안 제133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 · 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假住所 → 임시주소(안 제21조), 其他 → 그 밖의(에)(안 제32조 등), 窮迫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안 제104조), 要하지아니한다 → 필요가 없다(안 제117조 등)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懈怠한 → 게을리한(안 제65조 등), 催告 → 촉구(안 제89조 등), 相對方과通情한虛僞의意思表示 →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안 제108조), 葬具 → 장례 도구(안 제164조 제2호)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26조 제1항 등), 目的 → 내용(제163조 제1호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表意者 → 의사표시자(안 제107조 등), 復任權 → 복대리인 선임권(안 제120조)

(5)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人 → 자연인(안 제1편 제2장 제목), 取消 → 철회(안 제7조 및 제8조), 심판 → 재판(안 제9조 등)

(6)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2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5조 등), 아니한 → 않은(안 제9조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예)

현 행	개 정 안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4조)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 (안 제4조)
1年以內의期間으로 (제163조 제1호)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안 제163조 제1호)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예)

현 행	개 정 안
他人에게加한損害 (제35조 제1항)	타인에게 입힌 손해 (안 제35조 제1항)
商事會社設立의條件에좇아 (제39조 제1항)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안 제39조 제1항)
同意가있는때에限하여 (제42조 제1항)	동의가 있어야 (안 제42조 제1항)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 (제100조 제1항)	통상적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안 제100조 제1항)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예)

현 행	개 정 안
權利의性質을變하지아니하는範圍에서 (제118조 제2호)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 제118조 제2호)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예)

현 행	개 정 안
第128條(任意代理의終了) 法律行爲에依하여授與된代理權은前條의境遇外에그原因된法律關係의終了에依하여消滅한다 法律關係의終了前에本人이授權行爲를撤回한境遇에도같다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제127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된다. 1.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2. 물권편

민법 물권편(제185조~제372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혼동(混同)(안 제191조), 부종성(附從性)(안 제292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 · 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要하지 아니하는 → 필요하지 않은(안 제187조), 算入한 → 포함된(안 제357조제2항)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隣地 → 이웃 토지(안 제216조 등), 忍容할 → 참고 받아들일(안 제217조제2항), 閉塞 → 막힌(안 제222조 등), 溝渠 → 도랑(안 제229조 제1항 등), 對岸 → 건너편 기슭(안 제229조 제1항 등), 堰 → 둑(안 제230조), 蒙利者 → 이용자(안 제233조), 相隣者 → 서로 이웃하는 자들(안 제235조 등), 貯置할 → 모아 둘(안 제244조), 石造, 石灰造, 煉瓦造 → 돌·석회·벽돌로 지은(안 제280조 제1항 제1호), 委棄 → 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안 제299조)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203조 제3항 등), 目的 → 대상(안 제191조 제1항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得失變更 → "취득·상실·변경(안 제186조), 前後兩時 → 전후 두 시점(안 제198조), 高地所有者 →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안 제221조 제2항)

(5)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지료 →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라 한다)(안 제286조), 要役地 → 편익을 받는 토지[이하 "요역지(要役地)"라 한다](안 제292조), 承役地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이하 "승역지"(承役地)라 한다](안 제293조)

(6)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때 →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안 제191조제1항), 이웃사람 → 이웃(안 제216조 제1항), 代理占有의禁止 → 점유 금지(안 제332조)

(7)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186조 등), 아니한다 → 않다(안 제187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192조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예)

현 행	개 정 안
前項의事態 (제217조 제2항)	제1항의 매연 등 (안 제217조 제2항)
他土地의 所有者 (제218조 제1항)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 (안 제218조 제1항)
그支給또는引渡前에 (제342조)	질권설정자에게 금전이나 물건이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안 제342조)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예)

현 행	개 정 안
隱秘에依한占有者 (제201조 제3항)	은밀히 점유한 자 (안 제201조 제3항)
許與할수있다 (제203조 제3항)	정해 줄 수 있다 (안 제203조 제3항)
合有物을處分또는變更함에는 (제272조)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안 제272조)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예)

현 행	개 정 안
不足이있으면(제315조 제2항)	부족하면(안 제315조 제2항)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예)

현 행	개 정 안
第316條(原狀回復義務, 買受請求權) ① 傳貰權이그存續期間의滿了로因하여消滅한때에는傳貰權者는그目的物을原狀에回復하여야하며그目的物에附屬시킨物件은收去할수있다 그러나傳貰權設定者가그附屬物件의買受를請求한때에는傳貰權者는正當한理由없이拒絶하지못한다	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전세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② 前項의境遇에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의同意를얻어附屬시킨것인때에는傳貰權者는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그附屬物件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로부터買受한것인때에도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부속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경우 2.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3. 채권편

민법 채권편(제373조~제766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이행지(履行地)(안 제378조), 전보배상(塡補賠償)(안 제395조), 과실상계(過失相計)(안 제396조), 분별(分別)(안 제439조), 현실제공(現實提供)(안 제460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 · 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除却 → 제거(안 제389조 제3항), 其他 → 그 밖의(안 제425조 제2항 등)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換金市價 → 환율(안 제378조), 朽廢한 → 낡아서 쓸모없게 된(안 제622조 제2항)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381조 등), 目的 → 대상물(제375조제1항 등) 또는 내용(제3편 제1장 제1절 제목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出財債務者 → 재산을 출연한 채무자(안 제425조), 受託保證人 → 부탁받은 보증인(안 제441조 등)

(5)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保全行爲 → 보존행위(제404조 제2항, 제405조), 檢索의抗辯 → 집행의 항변(제437조)

(6)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374조 등), 아니한다 → 않는다(안 제385조 제2항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674조의6 제2항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예)

현 행	개 정 안
選擇權은相對方에게있다 (제381조 제1항)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안 제381조 제1항)
各債權者또는各債務者는均等한比率로權利가 있고義務를負擔한다 (제408조)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안 제408조)
債務者는所持人의前者에對한人的關係의抗辯으로(제515조 본문)	채무자는 그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써 (안 제515조 본문)

當期後의一期를經過함으로써 (제660조 제3항)	그 기간의 다음 1기가 지난 때에 (안 제660조 제3항)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예)

현 행	개 정 안
債務의確定을將來에保留하여 (제357조 제1항)	채무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어 (안 제357조 제1항)
그增加額은債權者의負擔으로한다 (제403조)	채권자가 그 증가액을 부담한다 (안 제403조)
過失없는때에限하여 (제470조)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만 (안 제470조)
變更을加한承諾 (제534조)	청약을 변경한 승낙 (안 제534조)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예)

현 행	개 정 안
不足되는(제574조)	부족한(안 제574조)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예)

현 행	개 정 안
第490條(自助賣却金의供託) 辨濟의目的物이供託에適當하지아니하거나滅失또는毁損될念慮가있거나供託에過多한費用을要하는境遇에는辨濟者는法院의許可를얻어그物件을競賣하거나市價로放賣하여代金을供託할수있다	제490조(매각대금의 공탁) 변제의 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市價)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공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탁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

4. 친족편 · 상속편

민법 친족편·상속편(제767조~제1,118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혈족(血族)(안 제767조), 인척(姻戚)(안 제767조), 친계(親系)(안 제772조), 파양(罷養)(안 제776조), 인지(認知)(안 제781조 제5항), 중혼(重婚)(안 제810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 · 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안 제777조), 相對方에對하여 → 상대방에게(안 제805조 등), 1町步, 600坪 → 9,917.36제곱미터, 1,983.47제곱미터(안 제1008조의3)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連署 → 잇따라 서명한(안 제812조 제2항 등), 胞胎 → 임신(안 제820조)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955조 등) 또는 해당하는(안 제1014조 등), 目的 → 대상(제1082조 제1항 등) 또는 내용(제920조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死亡子 → 사망한 자녀(안 제857조), 最近親 →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안 제1000조제2항), 前後의遺言 → 먼저 한 유언과 나중에 한 유언(안 제1109조)

(5)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예) 자 → 자녀(안 제781조 등), 親生子 → 친생자녀(제4편제4장제1절 제목), 양자 → 양자녀(안 제772조 등), 친양자 → 친양자녀(안 제809조 등)

(6)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 → 여러 성년후견인(안 949조의2제1항)

(7)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아니한 → 않은(안 제781조 제5항 등), 하여야 → 해야(안 제812조 제2항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854조의2 제1항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예)

현 행	개 정 안
姻戚은 配偶者의 血族에 대하여는 配偶者의 그 血族에 대한 寸數에 따르고(제771조)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그 혈족 간의 촌수에 따르고(안 제771조)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예)

현 행	개 정 안
自由로約婚할 수 있다 (제800조)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안 제800조)
法令에違反함이없는때에는 (제813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제813조)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37조 제6항)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안 제837조 제6항)
强迫을免한날로부터6月內에 (제861조)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6개월 내에 (안 제861조)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예)

현 행	개 정 안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847조 제2항)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안 제847조 제2항)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912조)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안 제912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동계 패럴림픽 시상식 참석

법조인 동정

– 크로스 컨트리스키 여자스프린트 안나 밀레니나(러시아) 금메달 영예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대회 시상자로 참여하였다.

이진성 재판소장은 지난 3월 14일 강원도 평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크로스 컨트리스키 여자스프린트 입식 종목 시상식에서 안나 밀레니나(러시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빌데 닐슨(노르웨이) 선수에게 은메달을, 나탈리 윌키(캐나다) 선수에게 동메달을 각각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눈 위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눈이 쌓인 산이나 들판에서 스키를 신고 일정 코스를 빠르게 완주하는 종목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좌식, 입식, 시각장애로 구분된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이 재판소장의 메달 수여에 이어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마스코트 수여자로 함께하였다.